고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타 법률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공통	-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감사관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기획정책관	- 직무발명의 출원 전 발명내용	발명진흥법 제19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정보통신담당관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행정지원과	- 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세정과 징수과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복지정책과 찾아가는복지과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도시계획정책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건소	- 환자에 관한 기록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의료법 제21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항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공통	-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공개될 경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 통신회선 운영 및 관리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행정지원과	- 청사방호계획, 경비시스템 관리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산관리과	- 청사 설계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시민안전과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민방위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 인력동원 계획수립 및 자원관리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평화미래정책관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민원여권과	- 인감대장, 발급대장, 인감전산자료, 인감관련 각종 신고서 등 인감업무 관련자료	공개될 경우 위·변조되어 범죄목적 등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차량등록과	-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련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보건소	- 마약 등의 취급 시설에 관한 정보	공개 시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등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법무담당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임 ※ 재판 확정 후 공개여부 재검토
차량등록과	- 차량 무보험운행자, 무단방치 차량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업무 수행관련 정보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5. 감사 · 계약 · 의사결정 · 내부검토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감사관	- 불시 감사계획 - 감사업무 개선안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기획정책관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가 원칙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예산담당관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예산확정 이전에 공개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법무담당관	-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에 대한 압박
행정지원과	- 인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위원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음
주민자치과	- 회의 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 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 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회계과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6.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u>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u>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공통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공무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급여, 계좌번호, 연가사유 등)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행정지원과	-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 임용관련 신원조사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 시험위원, 면접위원, 시험관리관 등 시험관련 위원의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복지정책과 등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선정결과 등 - 사례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 긴급복지대상자관리 선정결과 - 장애활동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등록장애인 명단 등 개인인적사항 - 기초연금 신청자 인적사항 - 한부모가정 인적사항 -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산정내역, 개인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주택과 등	-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서류 중 개인정보 - 임대사업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 임대사업자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 자료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7. 법인 · 단체 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공통	- 법인 등의 사회적평가, 신용,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법인등의 설계시공 공법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가능
세정과	- 세무조사 내부계획, 법인선정 조사 결과 통보내역	법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관광과	- 관광사업계획서 상의 인적사항 및 업체 고유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
도시교통정책실 등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